



2023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 인사말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2020년 11월 2일 출범하여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227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시민권익의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에 있어 공무원의 이해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규정을 마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의 결정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옴부즈만 부분 민원처리 평가에서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 운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일동

목 차

I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개요	5
	1. 추진배경 및 주요연혁	7
	2.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8
	3. 고충민원 처리 일반	9
II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실적	11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3
	2. 고충민원 주요 사례	15
III	시민고충처리위원 주요 활동 현황	31
	1. 시민고충처리위원 활동 성과(정부평가 : 단체표창 수상)	33
	2. 시민고충처리위원 주요 활동.....	34
	3.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홍보.....	39
IV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계획	43
V	참고 자료	47
	1.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9
	2.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2
	3.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세칙	53

I .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개요

- 1. 추진배경 및 주요연혁**
 - 2.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 3. 고충민원 처리 일반**
-

I. 운영 개요

1. 추진배경 및 주요연혁

□ 추진배경

- 평택시는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 63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의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권익 보호 제도만으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고충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제공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을 도입함.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연혁

- 2020. 03. 02. 『시민 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20. 06. 26.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20. 11. 02.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2명), 업무 개시
- 2021. 02. 08. 2020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10. 05.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가위촉(1명)
- 2022. 01. 26. 2021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2. 10. 17. 조례 제명 및 명칭 변경(시민옴부즈만 → 시민고충처리위원)
- 2023. 02. 24. 2022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3. 08. 03.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자문단 설치)
- 2023. 11. 09.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 구성 및 위촉계획 수립
- 2024. 01. 01.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 위촉(6명)

□ 운영방향

-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의 공정성 유지
-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개선방안 모색을 통한 민원 해결 방향 제시
-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원처리의 신뢰성 제고

2.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 구 성

- 인 원: 3명
- 근무형태: 주 20시간 근무
- 근무장소: 평택시청 본관 2층 시민고충처리위원실
- 활동수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급상당 하한액의 1/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직 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요구 등
- 위원현황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	
					
성명	박대근	성명	정규영	성명	남성진
경력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경력	전) 동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시공기술사)	경력	전) 평택시 공무원
임기	'20.11.2. ~ '24.11.1.	임기	'20.11.2. ~ '24.11.1.	임기	'21.10.5. ~ '25.10.4.

3. 고충민원 처리 일반

□ 고충민원 처리 절차



□ 고충민원 처리 결과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내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경우
각하
위원의 직무 및 권한 밖의 고충민원 및 신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경우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 개선의 권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권익위예규 제283호)

II.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실적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고충민원 주요 사례
-

II. 운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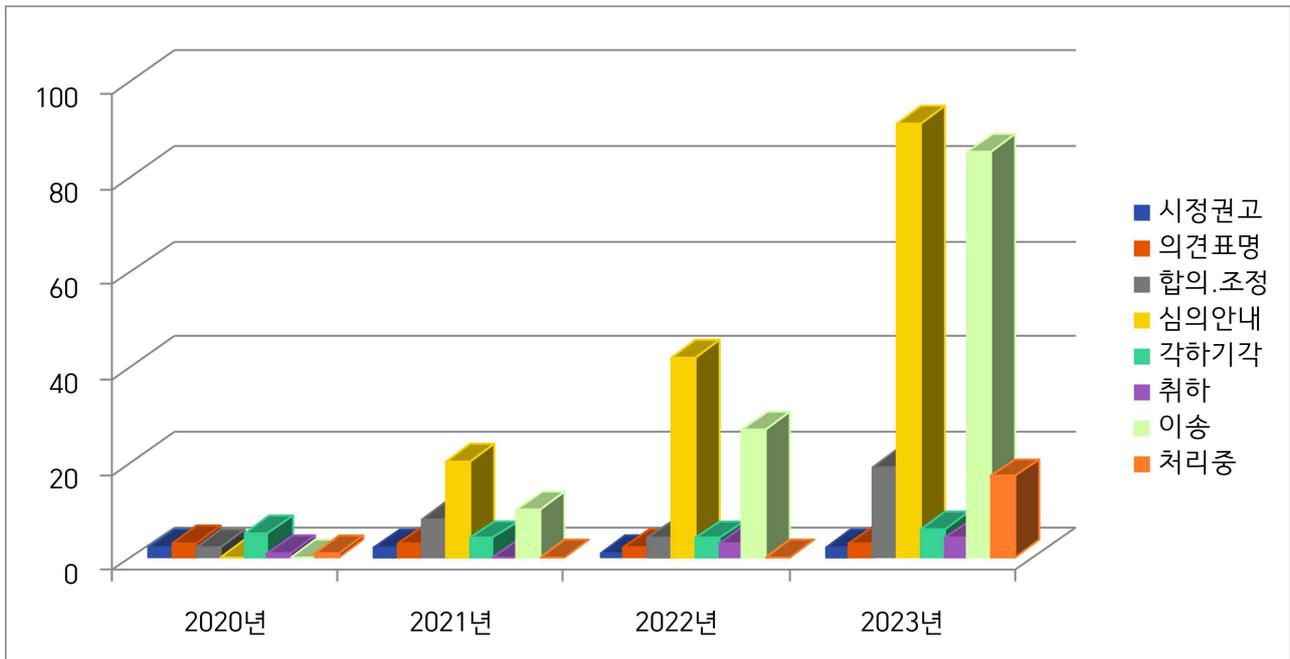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023.12.31.기준)

구분	접수	처리 완료							이송	처리중
		소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조정	심의 안내	각하. 기각	취하		
합계	371	231	7	11	33	153	19	8	122	18
2023	227	125	2	3	19	91	6	4	85	17
2022	83	56	1(1)	2(2)	4(3)	42(8)	4(1)	3	27	0
2021	47	37	2	3	8	20	4	0	10	0
2020 (11월~)	14	13	2	3	2	0	5	1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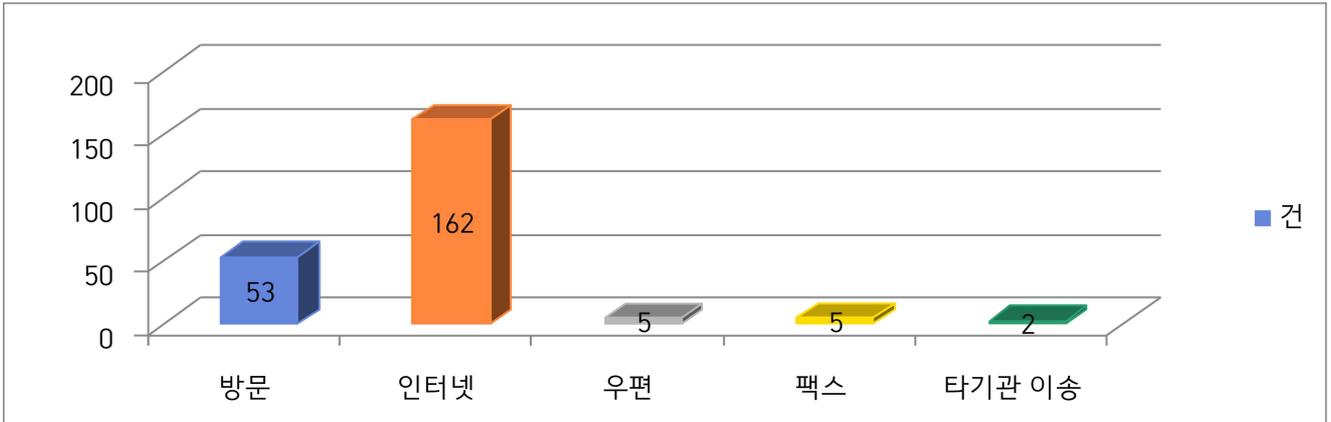
※ () : 2022년 접수되어 2023년에 처리 완료된 민원 건수



- 2023년 고충민원 조사 결과 조치 요구한 시정권고 3건, 의견표명 5건 모두 부서에서 수용함.
- 부서에서 바로 처리하면 효율적인 단순 민원 증가로 이송 건수가 늘어남

□ 2023년 민원 접수 경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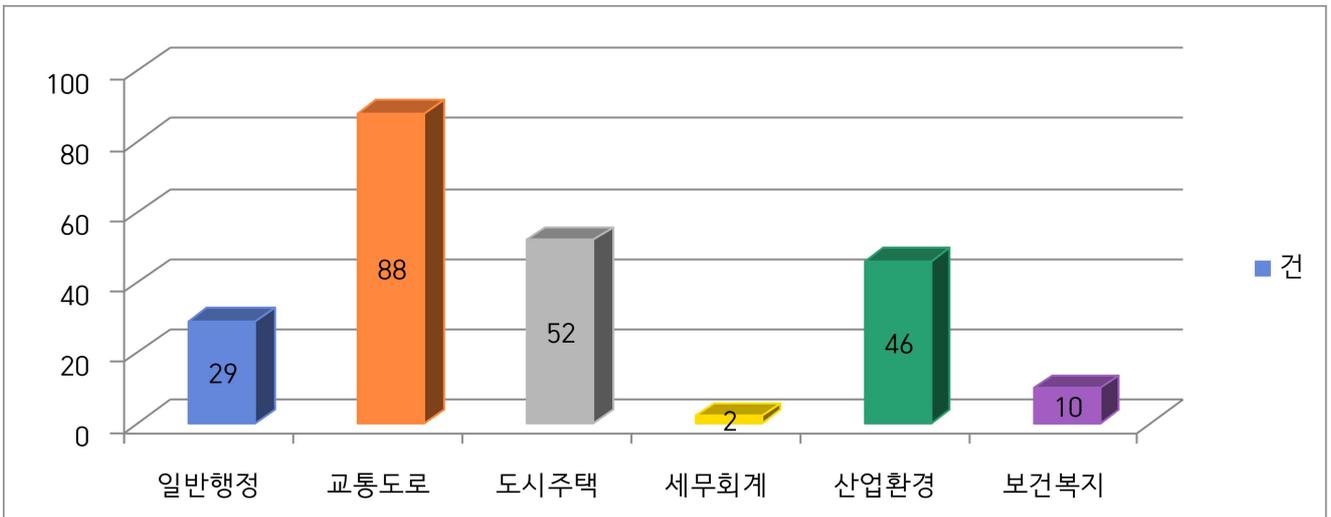
구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타기관 이송
계	53	162	5	5	2



○ 시 홈페이지를 통한 배너 게시 및 인터넷 접수 창구 운영으로 인터넷 접수 비중이 71%로 가장 높음.

□ 2023년 민원 접수 분야별 현황

구분	일반행정	교통도로	도시주택	세무회계	산업환경	보건복지
계	29	88	52	2	46	10



○ 2023년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총 227건의 민원이 분야별로는 교통도로 (39%), 도시주택(23%), 산업환경(20%), 일반행정(13%), 보건복지(4%) 세무회계(1%) 순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접수되었음.

2.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시정권고 사례

시정권고 1 불법 형질변경 토지 조치 요구

- **(민원내용)** 민원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민원인 토지를 동의도 없이 불법 성토하여 토사유출이 되면서 더 이상 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 요구
- **(처리결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전·답으로 사용해 온 토지를 경작을 위해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나, 2m 이상의 성토·절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보다 성토 높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원상복구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 **(수용여부)** : 수용



▪ 민원 현장 조사

시정권고 2 전기차전용 충전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

- **(민원내용)** 신청인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2023. 2. 13. 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였다고 2023. 2. 14. 주차위반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바닥면에 전기차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글씨가 차량으로 가려져 안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검토 요구
- **(처리결과)** 차량 주차로 인하여 바닥에 충전구역 표시가 안보이더라도 실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벽면에 충전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진이 동일한 위치와 방향이 아니더라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정권고
- **(수용여부)** : 수용



▪ 위반 신고 사진 1



▪ 위반 신고 사진 2

※ 권익위 처리사례 연구포럼(2023. 9. 12.), 아산시옴부즈만 주관 사례발표(2023. 12. 13.)

시정권고 3 영아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 요청

- **(민원내용)** 현재 조례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이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부모는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생후 55일 만에 사망한 신생아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
- **(처리결과)** 피신청인에 타 지자체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주 제한을 폐지하고, 사산아, 신생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제도개선 시정권고
- **(수용여부)** : 수용

□ 의견표명 사례

의견표명 1 불합리한 테니스장 예약 방식 개선 요청

- **(민원내용)**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타.시군은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한데 평택시는 직접 코트로 방문 대기하는 선착순 사용시스템 운영 방식이 불편하니 온라인 예약제 등을 신설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요청
- **(처리결과)** 현재 코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게 될 경우, 소수의 인원이 주요 시간에 독점 점유로 순환률 저조에 따른 불편 증가, 동호인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테니스 코트를 증설하여 줄 것과 증설 시에는 일부 코트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들도 동호회 회원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견표명
- **(수용여부)** : 수용

의견표명 2 대지로 이용 중인 임야 지목변경 요청

- **(민원내용)** 지목상 임야 지상에 50여 년간 주택으로 이용해 오던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승인을 받았으나, 임야로 되어 있는 지목을 대(垓)로 지목변경 요청
- **(처리결과)** 이 토지의 지상 건축물은 양성화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산지전용허가를 허용토록 의견표명
- **(수용여부)** : 수용



▪ 1975년 (항공사진)



▪ 2022년(신청 당시)

※ 경기도 주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 (2023. 11. 2.) 사례발표

의견표명 3 고시·공고에 따른 의견수렴방법 개선 요청

- **(민원내용)** 평택시가 고시·공고 시 의견수렴 방법을 주민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민참여가 저조하므로 APP, SNS, 인터넷, 메일 등 다양하게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고시·공고의 의견수렴 방법 개선 요구
- **(처리결과)** 「행정절차법」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방문 및 우편 접수 외에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견제출 접수 방법을 고시·공고문에 알릴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 **(수용여부)** : 수용
※ 권익위 처리사례 연구포럼(2023. 5. 9.) 사례발표

의견표명 4 불법형질변경 요구

- **(민원내용)** 평택시 안중읍 00리 541 구거를 인접 농지주가 불법으로 성토를 하여 신청인 토지가 배수기능 상실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조치 요구
- **(처리결과)** 조성된 농지의 형질변경은 인접토지의 관계·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신청인에게 비탈면 토사유출, 배수 등에 대하여는 인접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상복구 행정조치(안전조치)를 하도록 의견표명
- **(수용여부)** : 수용



▪ 민원 현장 조사



▪ 민원 현장 조사

의견표명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요청

- **(민원내용)** 안중읍은 충전소가 부족하여 먼 거리 충전소를 이용함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요구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재안내[○○○○과-4○○○(2022.11.25.)]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의견표명
- **(수용여부)** : 수용



▪ 민원 신청 당시 충전소 설치 전



▪ 의견표명 후 충전소 설치 후

□ 합의 사례

합의 1 진위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요청

- (민원내용) 진위면 ○○리 400번지 앞 도로에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 및 진위산단 차량 과속으로 위험하니 신호등 설치 요청
- (처리결과)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좁고 혼잡한 도로(오거리) 여건상 신호기 설치가 불가하고, 오히려 차량 지정체로 교통흐름에 방해되므로, 횡단보도 전후로 과속방지턱 추가설치 및 노인보호구역(30km/h)으로 지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

	<h3>합 의 서</h3>																					
	<table border="1"> <tr> <td>민원번호</td> <td>2022-66, 신호등 설치 요청</td> </tr> <tr> <td>합의일시</td> <td>2023. 2. (화) 15:00</td> </tr> <tr> <td>합의장소</td> <td>평택시 진위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td> </tr> </table> <p>합의내용</p> <p>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은 신청인의 "진위면 진산리 400번지 앞 도로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는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므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 민원 도로는 도로여건상 신호기 설치가 불가하고, 신호기 설치가 차량 지정체로 인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역 민원 발생이 우려한다는 피신청인1의 주장을 이해한다. 2. 피신청인1은 횡단보도 전후로 과속방지턱 추가설치 및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설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다. 3.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피신청인1의 조치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같. <p style="text-align: center;">2023. 2. 6.</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p> <table border="1"> <tr> <td>신청인</td> <td>김영남 (주요민원인)</td> <td>김영남</td> <td>김영남</td> </tr> <tr> <td>이해관계인</td> <td>김영남</td> <td>김영남</td> <td>김영남</td> </tr> <tr> <td>피신청인1</td> <td>김영남</td> <td>김영남</td> <td>김영남</td> </tr> <tr> <td>피신청인2</td> <td>김영남</td> <td>김영남</td> <td>김영남</td> </tr> </table> <p>평택시시민고충처리위원 김영남</p>	민원번호	2022-66, 신호등 설치 요청	합의일시	2023. 2. (화) 15:00	합의장소	평택시 진위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신청인	김영남 (주요민원인)	김영남	김영남	이해관계인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피신청인1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피신청인2	김영남	김영남
민원번호	2022-66, 신호등 설치 요청																					
합의일시	2023. 2. (화) 15:00																					
합의장소	평택시 진위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신청인	김영남 (주요민원인)	김영남	김영남																			
이해관계인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피신청인1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피신청인2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 민원 현장 조사

▪ 합의서

합의 2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매수 요청

- **(민원내용)** 신청인 소유 토지 중 5필지가 지방도 ○○○호선 등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미지급 받은 고덕면 ○○리 ○○○번지 등에 대하여 즉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 요구
- **(처리결과)** 공익사업에 편입된 3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신청시 조속히 지급하기로 하고, 마을안길로 이용되고 있는 2개 필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필지가 아니므로 보상 근거가 없어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신청인은 추후 소송 등 부당이득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



▪ 민원 현장 조사



▪ 민원 현장 조사



▪ 현장 회의



▪ 합의서 서명

※ 권익위 처리사례 연구포럼(2023. 2. 8.) 사례발표

합의 3 마을 진입로 도로 원상복구 요청

- **(민원내용)** ○○산업이 경계담장을 설치하면서 국유지인 ○○리760-1(도로),762-2(도로)를 무단점유를 하여 마을 진입로 통행을 방해함
- **(처리결과)** ○○산업은 경계를 침범하여 국유지에 설치된 담장을 조속히 이전 설치하고, 추후 침범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민원도로를 현장 여건에 맞게 포장 공사를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



▪ 민원 현장 조사



▪ 합의서 서명

합의 4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 요청

- **(민원내용)** 평택 ○○단지 내 ○○동 ○○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출근 시간대 (08~ 09시)에 작업함으로 인하여 출근 차량 통행이 불편하니 개선 요구
- **(처리결과)** 공사 시공사는 출근시간대 도로점용 작업을 최대한 줄이고, 작업 기간도 23년 5월까지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관리부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조치를 지도·감독 하기로 합의



▪ 현장 회의



▪ 합의서

합의 5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식생블럭 설치 연장 등

- (민원내용) 평택시가 시도 ○○호선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신청인 건물 앞 도로사면에 식생블록을 15m만 연장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추가연장과 배수로 추가 설치 요구
- (처리결과) 공사 시공사는 도로 성토사면의 식생블록을 당초 15m에서 54m로 연장 설치하고, 배수로 26m도 2023년 5월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공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적극 협조(토지사용)하기로 합의



▪ 현장 회의



▪ 합의서 서명

합의 6 불법성토로 인한 침수피해 조치 요구

- (민원내용) 신청인 주변 토지주가 3필지를 임의로 2m를 성토하여 신청인 토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니 조치 요청
- (처리결과) 주변 토지주는 성토 대지 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인접한 토지에 침수피해를 차단하고, 추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



▪ 민원 현장 조사



▪ 민원 현장 조사

합의 7 행정구역변경 요청(통학구역조정)

- **(민원내용)** 신청인은 주소가 안중읍으로 되어 있어 자녀들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안중초로 통학하는 데 너무 불편하니, 생활권이나 모든 면에서 인접하고 도보로 7분 거리인 청북읍에 있는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행정 구역 변경 요구
- **(처리결과)** 신청인이 실제 요구하는 사항은 학구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안중읍 덕우 1~2 지역은 안중초보다 근거리 지역인 청옥·청아 초교로 통학구역을 조정하기로 합의

합의 8 도로변 소나무 고사 방지 조치 요청

- **(민원내용)** 신청인이 다니는 도로변 소나무가 철조망에 감겨 고사 우려와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하므로 철조망 제거 등의 조치 요구
- **(처리결과)** 철조망이 감긴 소나무 2 그루임을 확인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피신청인에게 철조망 제거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제거하여 민원 해결



▪ 민원 현장 조사

▪ 민원 해결 사진

합의 9 공사대금 해결 요청

- **(민원내용)** 신청인은 평택시 포승읍 ○○리 산○○○ 일원에 건립된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처리결과)**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항은 사인간의 관계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 사항이나, 신청인은 동일한 민원을 수차례 반복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추후 피신청인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사업주체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 시 사업시행 관련자 등에게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해결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 지지 아니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하는데 관계자 모두 동의하여 합의해결

합의 10 하수관로 역류에 따른 조치 요구

- **(민원내용)** 시청에서 작년 하수관로 공사를 한 뒤로 하수관로가 막혀서 집으로 역류하므로 조치 요구
- **(처리결과)** 신청인 입회하여 하수 배출 시험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관로 오점으로 인한 현상은 아니며, ○○빌 4동 1호라인 건물 내부 배관이 3동으로 연결되어 합류 배출됨에 따라 건물 내부 배관 문제로 이는 건축주가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함. 다만 ○○빌 3동 정화조 폐쇄 후 오수받이까지 관로 연장이 길어 준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중간 부분에 오수받이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



▪ 전경사진 (건물+오수받이)



▪ 배관사진

합의 11 반사경 설치 요구

- **(민원내용)** 함박산 9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 도로 오른쪽 방향이 컨테이너 등에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볼록거울(반사경)을 설치 요구
- **(처리결과)** 현장 확인한 결과, ○○동 ○○○○번지 일원 현장은 우회전 시 반사경 미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반사경을 설치하기로 합의



▪ 민원 현장 조사

▪ 반사경 설치 후

합의 12 도로 맨홀 뚜껑 소음 제거 요청

- **(민원내용)** 신청인 아파트 앞 도로 맨홀 공사 후 차량이 지나칠 때마다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숙면을 취할 수 없으므로 조치 요구
- **(처리결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맨홀로 확인되어 조치를 요청하였고 한국전력평택지사에서 2023. ○. ○. 맨홀 뚜껑 틈보강으로 소음경감 조치를 하여 소음이 해결됨



▪ 민원 현장 조사

▪ 민원 현장 조사

합의 13 농업 용수로 설치 요구

- **(민원내용)** 신청인 농지(○○리 ○○○) 앞으로 도로(계양로)가 개설되면서 용수 파이프를 ○○리 ○○ 주택담장 안으로 매설하여 사용해 왔으나, 건축주와 다툼으로 평택시 소유 도로부지로 농수로 매설 허가 요청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계양로 도로부지에 농업용수로 매설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도로점용을 허가 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관련 법에서 정한 요구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허가받기로 합의



▪ 민원 현장 조사



▪ 합의서 서명

합의 14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담

- **(민원내용)**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인에게 잘못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32백만원을 전액 환급해 주거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38 백만원 중 32백만원을 상계처리하고 6백만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23. 8. 1.부터 하수도가 연결되었으므로, 9월분 하수도요금 143,240원 중 연결 이전에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 취소 요구
- **(처리결과)** 신청인이 과오납한 2003. 3.부터 2023. 6.까지의 하수도 사용료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일부 과오납금을 환급하였고, 2023년 4차 추경에 편성하여 환급하겠다고 한 것에 위법·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오납금과 추후 발생될 원인자 부담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일부 환급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9월분 하수도 사용료 143,240원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한 민원이 일부 해결되었으므로 합의해결

합의 15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

- **(민원내용)**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차량은 11년 이상된 소형승용차로 체납처분비로 충당하고 남은 가치가 없는 차량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압류처분 시점으로 압류해제 요구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압류 당시 이미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어 압류해제일을 당초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하기로 합의

합의 16 상가 천정 누수 조치 요구

- **(민원내용)** 00전통시장 천정 공사 후 누수가 심하니 조치 요구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2023. 10. 19. ~ 20. 폴리우레사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인 요청 구간이 협소하여 폴리우레사 방수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누수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으로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보수하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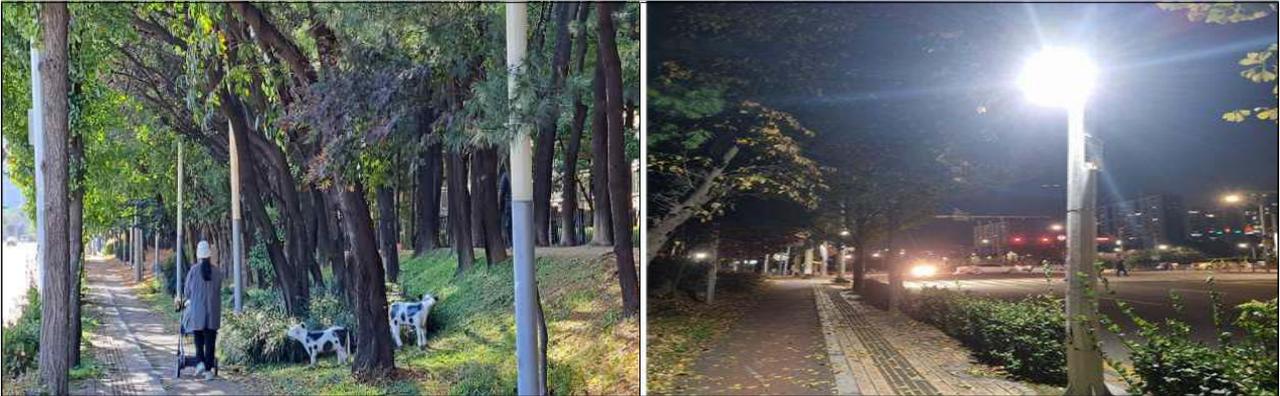
▪ 현장 민원 상담



▪ 민원 현장 조사

합의 17 | 공원 열주등 수리 요청

- **(민원내용)** ○○동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열주등이 고장 나서 공원 산책 및 통행에 불안하다고 수 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 조치 요구
- **(처리결과)** 현장확인결과 45개소의 열주등 전체가 고장상태여서 업무 담당자 (○○관리과, ○○녹지과) 등과 함께 민원 해결 방안을 협의한 결과 ○○관리과 에서 기존에 설치된 열주등이 노후하여 새롭게 가로등 부착형 LED 보행등 21개소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밝게 개선하는 것으로 민원 해결함



▪ 민원 현장 조사 (설치 전)

▪ 보행등 설치 후

Ⅲ. 시민고충처리위원 주요 활동 현황

1. 시민고충처리위원 활동 성과
 2. 시민고충처리위원 주요 활동
 3. 시민고충처리 제도 홍보
-

Ⅲ. 시민고충처리위원 주요 활동 현황

1. 시민고충처리위원 활동 성과

-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포상' 위원장 표창 수상
 - 부 문 : 민원·옴부즈만 운영 우수단체(전국 80개 중 2개 단체)
 - 훈 격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일 시 : 2024. 2. 27.(화) 14시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만점
- 고충민원 처리분야, 시민고충처리위원 활성화 지표

2. 시민고충처리위원 주요 활동 현황 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및 활성화 방안 홍보 교육 실시

- 대 상 : 평택시 5급 이상 공무원
- 일 시 : 2023. 2. 24. (간부 회의 시)
- 장 소 : 시청 종합상황실
- 내 용 : 제도 및 활성화 방안(적극행정면책규정 마련 건의 포함)



□ 적극행정 면책 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시행 19. 6. 25.)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시행 23. 5. 24)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경기도 옴부즈만 및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맞춤형)「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 목 적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특성 고충의 효과적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일 시 : 2023. 6. 21.(수) 10:00 ~ 15:00
- 장 소 :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상 담 반 : 10명(권익위 5, 평택시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신용회복위원회 1)
- 실 적 : 총 17건 / 민원접수 9건(권익위 4건), 상담 8건



□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 기 간: 2023년 7월 ~ 10월(7회, 월요일 14시~17시)
- 장 소: 평택산업관리공단, 평택상공회의소, 전통시장(4개소), 송탄 출장소
- 실 적: 총 30건 / 민원접수 22건, 상담 8건



□ 시민고충처리위원 역량 강화 활동

○ 교육 참여 및 사례 발표

¶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포럼

- 일시 : 2023. 2. 8.(수) 14:00 ~ 16:30
- 장소 : 오송&세종컨퍼런스 , 발표자 박대근



¶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2023. 5. 3.(수) 13:00 ~ 17:00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제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포럼

- 일시 : 2023. 5. 9.(화) 14:00 ~ 16:30
- 장소 : 오송&세종컨퍼런스 , 발표자 박대근



¶ 제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포럼

- 일시 : 2023. 9. 12.(화) 14:00 ~ 16:30
- 장소 : 오송읍행정복지센터, 발표자 박대근



¶ 서울·경기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및 세미나
 > 일시 : 2023. 9. 22.(금) 14:00 ~ 16:00
 > 장소 : 용산구청 대회의실



¶ 경기도 옴부즈만 워크숍
 > 일시 : 2023. 11. 2.(목) 9:00 ~ 16:00
 > 장소 :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발표자 남성진



¶ 제6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 일시 : 2023. 11. 15.(수) 14:0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 충청경기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및 연구포럼
 > 일시 : 2023. 12. 13.(수) 14:00 ~ 16:30
 > 장소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발표자 박대근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아산시 '이동 신문고' 전문 상담관 활동

○ 일 시: 2023. 6. 28.(수) 9:30 ~ 16:00

○ 장 소: 아산시 온양 4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내 용: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박대근)이 전문 상담관으로 활동

□ 우리 시 벤치마킹 방문

○ 일 시: 2023. 6. 28.(수) 16시

○ 방문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3.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홍보

○ 평택시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 운영 (홍보 배너 표출)



○ 유튜브 출연



○ 리플릿 제작



○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 현수막 제작



○ 언론 보도

뉴스프리존
HOME 지역 경기

평택시, 지난해 고충 민원 83건 중 67건 합의

▲ 김복순 기자 | 2023.03.24 13:15

[경기=뉴스프리존] 김복순 기자=평택시가 '2022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을 시 누리집에 공표했다.

운영성과로는 고충 민원 총 83건을 접수해 67건은 합의, 합의 안내 등으로 처리 완료했으며, 16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평택시청 제공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1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시민몰부즈판'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결과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77% 증가했다.

올해에는 평택시 공무원에게 시민고충처리위원제도와 적극행정면책기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충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대립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고충처리위원 뜬다...소상공인·지역민과 현장소통

9월~10월까지 찾아가는 고충상담의 날 운영

2023년 08월 28일 (월) 오후 04시 34분 34초
김아라기자 ara@news24.com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 평택시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평택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 서비스를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평택시, 「찾아가는 고충상담의 날 운영」

-소상공인, 지역주민의 고충·불편을 상담해 드립니다.-

□ 일시·장소

일정	장소	비고
9월 4일 (14:00 ~ 17:00)	동북시장(고덕전대 1층)	
9월 11일 (14:00 ~ 17:00)	서명리시장(상인회사무실 4층)	
9월 18일 (14:00 ~ 17:00)	평택상동회소 4층	
10월 16일 (14:00 ~ 17:00)	송탄시장(애송전대 1층)	
10월 23일 (14:00 ~ 17:00)	평택국제중앙시장(고덕전대 1층)	
10월 30일 (14:00 ~ 17:00)	송탄 출장소(민원실)	관할 읍·면·동

□ 주 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 문의전화: 031-8024-2026-8

평택시 찾아가는 고충상담의 날 운영 일정보. (사진=평택시)

운영 일정은 △9월 4일 동북시장(고덕전대) △9월 11일 서명리시장(상인회 사무실 4층) △9월 18일 평택상동회소 △10월 16일 송탄시장(애송전대) △10월 23일 평택국제중앙시장(고덕전대) △10월 30일 송탄출장소(민원실)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상담은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고충, 불편 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별도 예약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찾아가는 고충상담의 날을 통해 소상공인,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 다양한 고충들이 해결되어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김아라 기자
[1는 아이뉴스24, 간뉴스24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ra@news24.com]

IV.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계획

IV.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계획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단 운영

○ 목 적

-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직무수행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 위촉기간 : 2024. 1. 1. ~ 2025. 12. 31.(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구성현황 : 6명 (10명 이내)

분 야	법 률	세 무	환 경	토 목	노 무
6명	2명	1명	1명	1명	1명

※ 향후 민원 증가 시 필요한 분야 추가 위촉 예정

○ 역 할

- 고충 민원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고충 민원 중 기술적·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 그 밖에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 운영방법

- 자문단 회의는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 고충 민원 분야별 개별 자문

□ 임기 만료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촉

○ 모집 인원 : 2명 (2024. 11. 1. 임기 만료로 인한 신규 위촉)

※ 정수 5명 중 3명으로 운영 중

○ 위촉 기간 : 4년 단임(주 20시간)

○ 추진 일정



○ 추천위원회 구성 (7명 이내)

- 당연직(2) : 부시장(위원장), 행정자치국장
- 위촉직(5) : 시의원, 변호사·교수, 사회단체 추천자

□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 목 적

- 고충처리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함으로써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방 법



○ 일 정: 2023. 5월 ~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체 업무 협력**

○ 목 적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 내 용

- 고충민원의 처리 방안 교육 및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역량강화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업 운영으로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일 정: 연 2회(전국) 및 수시(권역별)

□ **시민고충처리위원 적극적 홍보**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 및 고충민원 신청 절차 안내

○ 방 법

- 읍·면·동 홍보: 단체 행사 및 회의 자료,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 시청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유튜브, 블로그)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 일 정: 연중

V. 참고 자료

1.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세칙
-

1.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6.26 조례 제1836호
(전부개정) 2022.10.17 조례 제2167호
(일부개정) 2023.08.03 조례 제22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원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기구”란 위원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8.3.)

제2장 위원회 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

1.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위원회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5.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업무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3.8.3.)

③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대표위원은 대표위원 명한다.

④ 위원 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과 같다.

제5조(대표위원의 직무) ① 대표위원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소속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3.)

③ 당연직 추천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23.8.3.)
2. 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 수정 2023.8.3.)

제10조의2(자문기구) ① 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3.8.3.)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 제3조제1호의 위원의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52조를 따른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6.26.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17.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17.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11.11 규칙 제757호

(일부개정) 2023.01.27 규칙 제813호

(일부개정) 2023.09.11 규칙 제82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회의의 진행) ①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회의는 대표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7.)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며 의안의 제안설명은 의안의 조사 등에 참여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3.1.27.)

③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④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의 경정) 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의 기피신청에 따라 대표위원은 기피신청 대상 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위원이 한다. (개정 2023.1.27.)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하려는 위원은 사전에 대표위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조제목 개정 2023.1.27.]

제4조의2(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충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중 기술적·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소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③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단 회의는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대표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은 자문단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위원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7조(대표자 선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8조(조사제외 등 통지) ① 위원은 법 제4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위원은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9조(합의 권고 및 조정)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3.1.27.)

② 위원은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대표위원이 주재한다. (개정 2023.1.27.)

③ 위원은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④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 운영상황 보고는 다음연도 2월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결과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개정 2023.1.27.)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23.1.27.)
4. 그 밖에 위원이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7.)

제12조(공인) ① 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3.9.11.)

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4조(비밀유지 서약) 위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부칙 (2020.11.11.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11.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세칙

(제정) 2020.11.11
(일부개정) 2023. 2.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자세) ①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 규정

제3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위원 1주간의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며,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 1일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09:00~18:00) 내에서 지정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위원 1일 근무일과 근무시간 지정은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표 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운영회의가 개최되는 월요일에는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위원 1일 근무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위원 운영지원 담당직원이 관리한다.

제5조(신분증 제시) 위원은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 ① 위원은 출장 중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근무일(근무시간)에 다른 위원이 부재중인 경우 출장을 지양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③ 위원이 관내·관외 출장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한다.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위원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는 『평택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위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연락체계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 운영지원 담당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대표위원 선임기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호선된 대표위원의 선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고충민원의 상담과 신청) ① 위원은 고충민원 상담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충민원 신청은 방문·우편·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다수인 관련 민원)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 관련 “다수인” 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서로 다른 2건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fax 또는 인터넷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기록표) 고충민원을 접수한 위원은 민원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권리) ①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은 민원의 조사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후에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제1항과 제2항은 문서 또는 유선, 제3항은 문서로 한다.

제16조(신청의 취하) ① 위원은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철하여 보관한다.

제17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 위원은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안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종결 등) ① 다음 각 호의 접수 내용은 자체종결 할 수 있다.

1. 위원이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2. 위원이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5. 조례 제3조의 위원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자체종결 할 경우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9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조사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에는 당사자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②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독촉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실지조사를 하거나 현지에서 신청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2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 보고)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24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처리결과 통지는 문서로 하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팩스로 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에서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을 요청한 경우 위원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재심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에서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위원 결재로 중지·종결 처리 한다.

제26조(처리결과 이행실태 사후관리) ① 위원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매월 처리결과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 시 이행촉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위원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결과를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평택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회의

제28조(운영회의 개최) 고충민원 조사여부 결정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제29조(조사여부 결정 등)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사·심의가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나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의결 직후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시행규칙 제1호서식의 의결서에 의결에 참가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③ 위원은 심의·의결된 고충민원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의결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제31조(정의) 위원의 활동비 지급 관련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동비란 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활동비월액이란 활동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써 4급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하한액의 2분의 1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활동기간이란 위원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활동비 지급기준) ① 제31조제2호의 “4급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표 제5호 나목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을 말한다.

② 위원의 활동비는 활동비월액에 따라 지급하며, 월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일 경우 별표1에 따른 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33조(활동비 지급방법) ① 위원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활동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활동비 지급일) ① 활동비의 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일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사무결재의 기준) 위원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결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2020.11.19.)

이 운영세칙은 평택시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03.)

이 운영세칙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